

##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 조영길부위원장의 3

나. 회 부 일 자 : 2003. 1. 22

다. 상 정 일 자 : 2003. 1. 22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부위원장 조영길

나. 제안이유

- 본회의 기간중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고, 군정질문의 근거 규정인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은 “군수등의 출석요구” 조항에 삽입되어 있어 조례 체계상 맞지않아 군정질문 근거 조항을 신설

다. 주요내용

- “5분 자유발언” 신설 (안 제37조의 2)
- “군정질문” 항을 삭제 (안 제66조 제4항)
- “군정질문” 조항 신설 (안 제66조의 2)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찬주)

-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장은 본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고 5분 자유발언의 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한다로 자유발언제 조항을 신설하고 군정질문 근거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 “군수등의 출석요구”조항에 삽입되어 있어 조례체계상 맞지않아 삭제하고 군정질문 근거 조항을 새로이 신설한 규칙안으로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화순군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화순군의회의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 자유발언의 순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순서에 의한다.

제66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 2(군정에 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또는 군정전반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 2(5분 자유발언)	<p>제37조의 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5분 자유발언의 순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순서에 의한다.</p>
<p>제66조(군수등의출석요구)</p> <p>①~③ - 생략 -</p> <p>④ - 생략 -</p>	<p>제66조(군수등의 출석요구)</p> <p>①~③ -현행과 같음 -</p> <p>④ - 삭제 -</p>
<p>제66조의 2(군정에 관한질문)</p> <p>- 신 설 -</p>	<p>제66조의 2(군정에 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